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8

발의연월일: 2024. 7. 15.

발 의 자:강대식 • 권영세 • 강승규

임종득 · 김예지 · 구자근

배준영 • 이종배 • 이인선

김 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는 술을 마신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어 적발된 철도종사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처벌 형량 역시 도로교 통법 상 음주운전에 비해 가벼워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였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도록 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및 제82조).

법률 제 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철도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79조제1항 중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4를 제4호로 한다.

-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 2.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제80조제2항 중 "제79조제1항, 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항제15호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3항제15호의 죄를 지은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2. 제79조제1항제2호, 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지어 열차운 행에 지장을 준 자

제81조 본문 중 "제7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6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을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항제16호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로, "제79조제3항제17호"를 "제79조제1항제1호, 제3항제15호 또는 제17호"로 한다.

제82조제2항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를 각각 제7호의3부터 제7호의 5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철도운 영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의 가중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전에 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항제15호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이법 시행 이후 다시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3항제15호의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도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철도운영자는 제1항 각 호
	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
	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
	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
	시 신고하여야 한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9조(벌칙) ① <u>제49조제2항을</u>	제79조(벌칙) ① <u>다음 각 호의 어</u>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	<u>느 하나에 해당하는</u>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
	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u><신 설></u>	2.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
	<u>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u>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 3의3. (생 략) <u>3의4.</u> (생 략)
- 4. (생략)
-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 6. ~ 8. (생략)
- ③ ~ ⑤ (생 략)

제80조(형의 가중) ① (생 략)

② 제79조제1항, 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열 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 설>

<신 설>

③ (생략)

- 1. ~ 3의3. (현행과 같음)
 4. (현행 제3호의4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삭 제>
 - 6. ~ 8.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0조(형의 가중)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 항제15호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3항제15호의 죄를 지은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2. 제79조제1항제2호, 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지어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
-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저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7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6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 (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80 조(제79조제3항제17호의 가중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 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 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 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82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제81조(양벌규정)
<u>제79조제1항부</u>
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
2호, 제3항제16호 및 제4항제2
호는 제외한다)
-제79조제1항제1호, 제3항제15
호 또는 제17호
오 그는 세17오
<u>.</u>
· 제8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음)
(2)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신 설>

<u>7의2.</u> ~ <u>7의4.</u> (생 략)

8. ~ 12. (생 략) ③ ~ ⑥ (생 략) _____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철도 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 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 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철도 운영자

7의3. ~ 7의5. (현행 제7호의2 부터 제7호의4까지와 같음)

8. ~ 1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